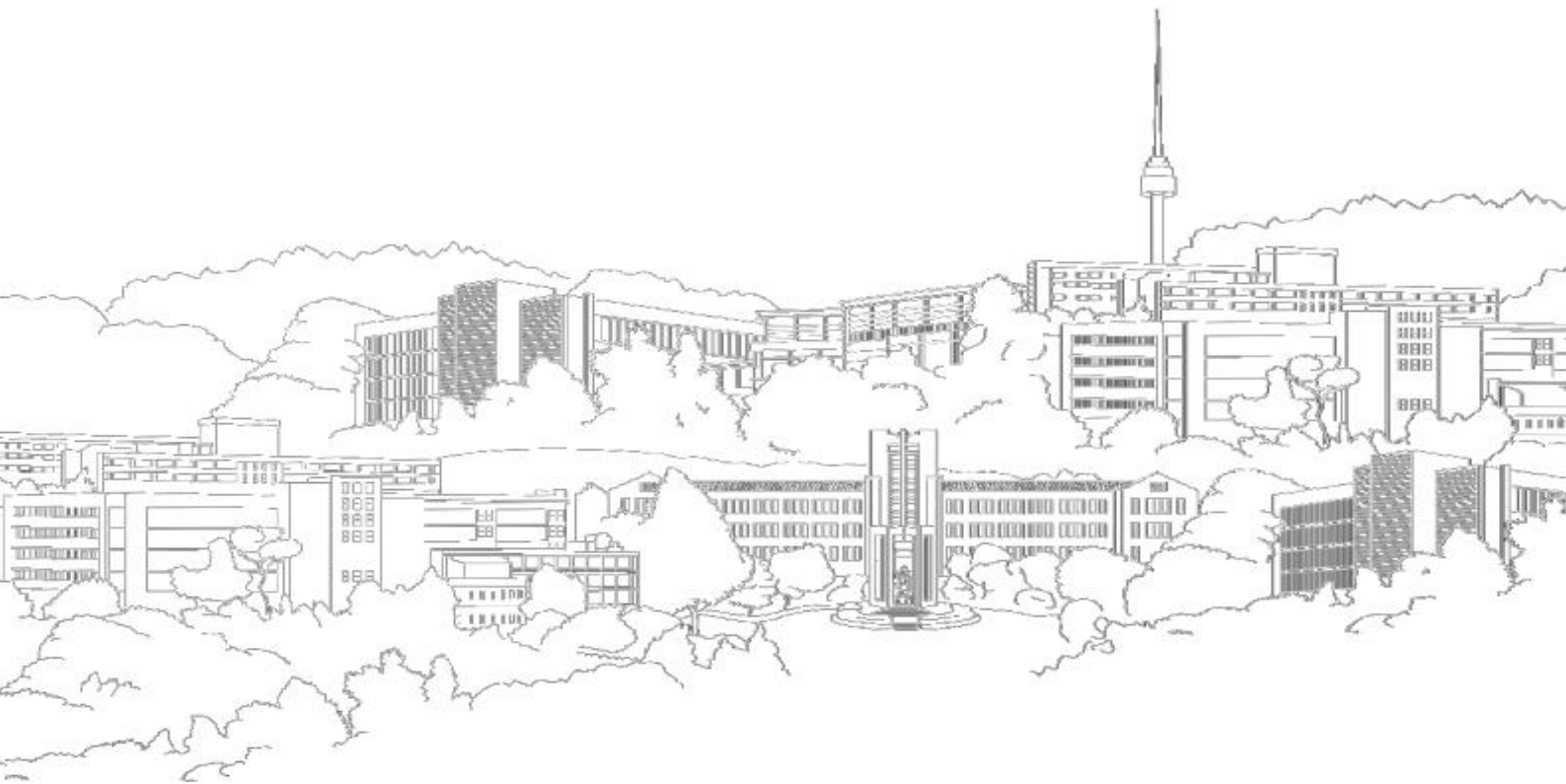

2026학년도 동국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기본계획

2024.04.



- 본 기본계획은 관계 법령 및 교육부 지침, 우리대학 학칙 개정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원서접수 전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(ipsi.dongguk.edu)에서 「모집요강」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- 2026 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주요사항 3
-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4
- 주요 전형일정 5
- 전형방법 6
- 지원자격 7
 - 기본 지원자격 7
 - 최소 국외 재학·근무·체류기간 8
 - 자격인정 공통사항 8
 - 중고교과정국외이수자 총 재학기간 인정기준 10
 -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 총 재학기간 인정기준 11
- 제출서류 13
 - 중고교과정국외이수자/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 제출서류 13
 - 북한이탈주민 제출서류 14
 -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4

① 변경사항

■ 중고교과정국외이수자 명칭 및 전형방법 변경

| 구 분 | 2025학년도 | 2026학년도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전형방법 | 1단계 : 필답고사 100% 2단계 : 지원자격심사 100% | 일괄 : 서류종합평가 + 지원자격심사 100% |
| 명칭 | 재외국민(일반) | 중고교과정국외이수자 |

■ 중고교과정국외이수자 지원자격 구분 통합

| 구분 | 2025학년도 | 2026학년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|
| 중고교과정국외이수자 세부 자격 구분 | 국외근무 공무원의 자녀 | 국외 파견 재직자 자녀 |
| | 국외근무 상사주재원의 자녀 | |
| | 국외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자의 자녀 | |
| | 정부유치 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| |
| | 교육·출장을 목적으로 체류한 자의 자녀 (※ 유학생의 자녀 제외) | |
| | 국외 선교사의 자녀 | |
| | 영주권 취득 국외 교포 자녀 | |
| | 현지법인 근무자의 자녀 | 현지 취업자 자녀 |
| 현지 자영업자의 자녀 | 현지 자영업자 자녀 | |

② 모집인원

| 전형명 | 모집인원 | |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인문계열/영화영상학과 | 자연계열 | 계 | |
| 중고교과정국외이수자 | 33명 | 21명 | 54명 | 모집단위별 선발 ※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5쪽 참조 |
|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 북한이탈주민 | 모집단위별 약간 명 | | | 일부 모집단위 제한 |

㉓ 지원자격

1) 중고교과정국외이수자

- 국외 재학기간 : 고등학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·고등학교과정 3년 이상을 수료한 자
-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: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(1,095일) 이상을 국외 근무/사업/영업
- 국외 체류기간 : 국외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은 3/4, 부모는 2/3이상 체류

2)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 :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·중등교육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
3) 북한이탈주민 :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와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북한이탈주민

㉔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

| 전형명 | 전형 단계 |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| | 비고 |
|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서류종합평가 | 지원자격 심사 | |
| 중고교과정국외이수자 /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 / 북한이탈주민 | 일괄 | 100% | P/F | 지원자격 심사 및 서류종합평가 일괄 시행 |

㉕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 : 7쪽 참조

| 대학 | 모집단위 | | 계열 | 모집인원 | 최대모집 가능인원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| | | |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| 전교육과정 국외이수자 | 북한이탈주민 |
| 불교 | 불교학부 | | | - | | |
| | 문화유산학과 | | | 1 | | |
| 문과 | 국어국문·문예창작학부 | 국어국문학/문예창작학 /뉴미디어한국어문화 | 인문 | 2 | | |
| | | 영어영문학부 | | 영어문학/영어통번역학 | | |
| | 일본학과 | | | 1 | | |
| | 중어중문학과 | | | 2 | | |
| | 철학과 | | | - | | |
| | 사학과 | | | 1 | | |
| | 이과 | 수학과 | | 자연 | | |
| 화학 | | 1 | | | | |
| 통계학과 | | 1 | | | | |
| 물리학과 | | - | | | | |
| 법과 | 법학과 | | 인문 | 2 | 모집단위별 약간 명 | |
| 사회과학 | 정치행정학부 | 정치외교학 | | 2 | | |
| | | 행정학 | | 2 | | |
| | | 북한학 | | - | | |
| 사회과학 | 경제학과 | | | 1 | | |
| | 국제통상학과 | | | 2 | | |
| | 사회·언론정보학부 | 사회학 | | - | | |
| | |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| | 2 | | |
| | 식품산업관리학과 | | | - | | |
| 광고홍보학과 | | 2 | | | | |
| 사회복지학과 | | - | | | | |
| 경찰사범 | 경찰행정학부 | 경찰학/산업보안/범죄과학/교정학 | 3 | | | |
| 경영 | 경영학과 | | 3 | | | |
| | 회계학과 | | 1 | | | |
| | 경영정보학과 | | 1 | | | |
| 바이오 시스템 | 바이오환경과학과 | | 자연 | - | | |
| | 생명과학과 | | | - | | |
| | 식품생명공학과 | | | 1 | | |
| | 의생명공학과 | | | 1 | | |
| 공과 | 전자전기공학부 | | 자연 | 3 | | 모집단위별 약간 명 |
| | 정보통신공학과 | | | 1 | | |
| | 건설환경공학과 | | | - | | |
| | 화공생물공학과 | | | 2 | | |
| |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| | | 2 | | |
| | 건축공학부 | 건축공학/건축학 | | - | | |
| | 산업시스템공학과 | | | 1 | | |
| | 에너지신소재공학과 | | | 1 | | |
| 첨단융합 | 컴퓨터·시학부 | | 자연 | 4 | | |
| | 시스템반도체학부 | | | 1 | | |
| 사범 | 국어교육과 | | 인문 | 1 | - | - |
| | 수학교육과 | | | 자연 | 1 | - |
| 예술 | 영화영상학과 | | 예체능 | 2 | 약간 명 | 약간 명 |
| 계 | | | | 54 | - | |

※ 상기 모집인원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, 반드시 「모집요강」에서 모집인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
| 주요사항 | 일 정 | 비고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원서접수 | 2025.07.07.(월) ~ 11.(금) 중 3일 이상 | |
| 서류제출 | 원서접수 시작일 ~ 마감+1일 17:00까지 | |
| 최초합격자 발표 | 2025.08. 예정 | |
| 최초합격자 등록 | 2025.12.15.(월) ~ 17.(수) | |
| 미등록 충원 합격통보 마감 | 2025.12.23.(화) 18:00까지 | |
|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| 2025.12.24.(수) | |

※ 상기 일정은 2026학년도 모집요강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1 전형방법

| 전형명 | 전형 단계 |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| | 비고 |
|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서류종합평가 | 지원자격 심사 | |
| 중고교과정국외이수자 /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 / 북한이탈주민 | 일괄 | 100% | P/F | 지원자격 심사 및 서류종합평가 일괄 시행 |

2 서류종합평가 및 지원자격 심사

1) 서류종합평가

- 평가방법 : 지원자의 제출서류(고등학교 성적증명서 및 활동증빙서류)를 바탕으로 학업역량, 진로탐색노력, 주도성 및 협업소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(※ 2024학년도 기준 평가항목 : ①학업역량 ②계열적합성 ③주도성 및 협업소통능력)
- 제출서류 : 13쪽 참조, 활동증빙서류 작성 유의사항은 추후 모집요강 참조

2) 지원자격 심사 : 지원자의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 및 지원자격 충족여부(P/F) 심사

3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

| 구분 | 방법 | 반영단계 | 비고 |
|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
| 재외국민 특별전형 공통 | 정성평가 | 일괄 | 최초합격 사정작업 시 반영 |

- ▶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외할 수 있음. 다만, 검정고시 합격자 등을 대상으로 학생부의 존재 여부를 원서접수 시 확인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함

1) 원서접수시 학교폭력 조치사항(징계 여부) 및 이와 관련한 소명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

2) 서류종합평가 시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한 정성평가

- ※ 일부 평가항목에 최저점 부여할 수 있음

Ⅰ 기본 지원자격

국내·외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(국외 검정고시 합격자 제외)로서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(고등학교 졸업년도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)

| 전형명 | 세부 자격구분/특기사항 | 자격 요건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| 국외 파견 재직자 자녀 |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 (1,095일)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/사업/영업하는 기간 동안,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1개 학년 이상(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)을 포함하여 중·고등학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|
| | 현지 취업자 자녀 | |
| | 현지 자영업자 자녀 | |
| 전교육과정 국외이수자 | 우리나라 초·중·고(6-3-3)와 12년 교육연한을 기준 |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·중등교육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및 결혼이주민 |
| 북한이탈주민 |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| 국내·외 고등학교를 졸업(예정)하였거나 이와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북한이탈주민 (※ 검정고시 지원가능) |

※ 「고등교육법시행령」 제29조제2항제7호 개정에 따라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·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「국적법」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도 「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」 지원자격 대상에 포함됩니다.

※ 지원자의 국외 재학기간은 보호자(부모)의 해당 국가 근무기간 내에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
㉒ 최소 국외 재학·근무·체류기간

1) 국외 재학·근무·체류기간

- ※ 국외근무기간 : 재직증명서상 국외발령일과 출입국사실증명서상 출국일 중 현재와 가까운 일자로부터, 재직증명서상 국내발령일과 출입국사실증명서상 입국일 중 현재와 먼 일자까지의 기간
- ※ 국외체류기간 : 출입국사실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기간을 제외한 기간

| 전형명 | 최소 국외 재학 · 근무 · 체류기간 | |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학 생 | | 국외근무자 | | 국외근무자의 배우자 |
| | 재학 | 체류 | 근무 | 체류 | 체류 |
| 중고교과정국외이수자 | 3년 | 학생 국외재학 기간의 3/4 | 3년 | 학생 국외재학 기간의 2/3 | 학생 국외재학 기간의 2/3 |
|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 | 12년 | 12년 | - | - | - |
| 북한이탈주민 | 제한 없음 | | - | - | - |

- 위 기간은 국외근무자의 근무·체류기간과 학생의 재학·체류기간의 중첩기간 중, 고등학교 과정 1개년을 포함한 최소기간을 의미합니다.
-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
: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(약 365일)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/4 이상을, 국외근무/사업/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/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합니다.(※ 체류일수 산정 시, 소수점은 절사합니다.)
-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
: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(약 365일)이 되는 날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/4 이상을, 국외근무/사업/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/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합니다.
-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의 재학기간은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전체 기간이며,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초·중·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재학기간이 인정됩니다. 단,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12년 이상을 이수하지 않아도 인정됩니다.
-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, 국외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.

㉓ 자격인정 공통사항 (※ 중고교과정국외이수자/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 모두 해당)

1) 국외학교 인정기준

- 국외학교는 국외에 소재한 정규학교를 의미하며,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학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국외학교 과정은 해당국 관계법령에 의거,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학교 과정만을 인정합니다.
(유아원, 유치원, 여학연수목적의 교육기관, 대학예비과정, 평생교육기관, 성인대학, 사이버·통신 교육과정 불인정)
- 국내·외 검정고시(미국·캐나다의 GED, 중국의 자학고시 등 포함) 출신자는 국외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자로 불인정합니다. (※ 단,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 인정)
- 초·중·고등학교 수학기간은 현행 대한민국 학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
2) 국외학교 재학기간 심사기준

- 보호자(부모)의 국외 근무기간과 지원자의 재학기간(고등학교 1개년 과정 포함) 중 중첩되는 기간이 재외국민 지원자격 인정기간입니다.(보호자(부모) 근무와 학생의 재학의 미중첩기간 중 지원자의 국외학교 재학기간은 재외국민 지원자격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나, 총 이수학기로는 인정)
- 우리나라 학제(12년)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,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(6개월)에 한하여 인정합니다.
-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(전·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)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·중·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.
- 동일 학년(학기)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 단,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,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.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만 대체할 수 있습니다.

〈재외국민 재학기간 관련 지원자격 인정 예〉

| 학년 | 1 | | 2 | | 3 | | 4 | | 5 | | 6 | | 7 | | 8 | | 9 | | 10 | | 11 | | 12 | | 비고 |
|----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-|---|----|---|----|---|--------|
| 학기 | 1 | 2 | 1 | 2 | 1 | 2 | 1 | 2 | 1 | 2 | 1 | 2 | 1 | 2 | 1 | 2 | 1 | 2 | 1 | 2 | 1 | 2 | 1 | 2 | |
| 국내 학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23개 학기 |
| 국외 학교 | | | | | | | | 누락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※ 중복학기 G2-2로 G4-2 대체 가능 / 중복학기 G7-1로 G9-1 대체 가능

※ G11-1의 누락은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

※ 학제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

〈재외국민 재학기간 관련 지원자격 불인정 예〉

| 학년 | 1 | | 2 | | 3 | | 4 | | 5 | | 6 | | 7 | | 8 | | 9 | | 10 | | 11 | | 12 | | 비고 |
|----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-|-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-|---|----|---|----|---|--------|
| 학기 | 1 | 2 | 1 | 2 | 1 | 2 | 1 | 2 | 1 | 2 | 1 | 2 | 1 | 2 | 1 | 2 | 1 | 2 | 1 | 2 | 1 | 2 | 1 | 2 | |
| 국내 학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22개 학기 |
| 국외 학교 | | | | | | | 누락 | 누락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※ 중복학기 G2-1~G2-2 중 한 개 학기만 G4-1~G4-2 중 한 개 학기 대체 가능

※ 중복학기 G7-1로 G9-1 대체 가능하며, G11-1의 누락은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

※ 학제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

- 국외재학기간 산정기준

- ▶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

: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(약 365일)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합니다.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- ▶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

: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(약 365일)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합니다.

- 학기 이수여부 인정기준 : 중간/기말고사 성적 유무 및 수업일수 2/3 이상 이수를 기준으로 판단

- 유급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제외합니다.

3) 자격인정 기준시점 - 국외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

| 구 분 | 지원자 재학·체류 자격종료시점 | 보호자(부모) 근무·체류 자격종료시점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기 졸업자 | 지원자 졸업일 | 지원자 졸업일 | |
| 2025년 8월 졸업예정자 | 지원자 2025년 8월 졸업예정일 | 지원자 2025년 8월 졸업예정일 | 조건부 합격자 |
|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| 지원자 2026년 2월 졸업예정일 | 지원자 2026년 2월 졸업예정일 | 조건부 합격자 |
| 2026년 3월 졸업예정자(일본 등) | 지원자 2026년 3월 졸업예정일 | 지원자 2026년 3월 졸업예정일 | 조건부 합격자 |

- ※ 단, 보호자는 지원자의 졸업예정일까지 근무기간이 역년으로 3년 미만인 경우 역년으로 3년이 되는 시점까지 근무해야 함
- ※ 조건부 합격자 : 졸업예정자 중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본인과 보호자(부모)의 지원자격은 미충족하였으나, 졸업시점에 모든 지원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합격통보를 받은 자

4) 자격인정 기준시점 - 국내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

-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자의 국외고등학교 재학기간과 국외체류기간 및 보호자(부모)의 국외근무·체류기간을 산출하여 지원자격 충족여부를 결정합니다.

5) 기타

- 지원자격 기간 동안 보호자의 신분이동으로 자격 구분이 상이할 경우, 지원자격 해당기간의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중고교과정국외이수자 지원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, 이혼 전 부모의 지원자격 관련 모든 서류와 이혼 후 친권자의 지원자격 관련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로 인한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,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리대학 지원자격 심사위원회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.
- 국내 체류 중 국외학교 원격 수업 등의 학기 이수 방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
Ⅳ 중고교과정국외이수자 총 재학기간 인정기준

1) 국외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: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·중·고(6-3-3제) 교육연한 12년 기준

- 13년 이상 학제인 국외고등학교에서 12년 이상을 수료하고, 초·중등 교육과정의 총 수학기간이 23개 학기 이상이면 국내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.
- ※ 단, 지원자격을 충족한 지원자는 13학년제 학교의 최종학년을 고3으로 인정하고 학년을 역산하여 계산합니다.

| 예 시 |
|--|
| · 지원자격을 충족하고 13년제 학교에서 12학년을 수료한 경우 고1과정은 Year 10 |
| · 지원자격을 충족하고 13년제 학교에서 13학년까지 이수한 경우 고1과정은 Year 11 |
| · 13년제 → 12년제 또는 12년제 → 13년제 이동한 경우에는 불법·편법의 소지가 없는 범위에서 1개 학년씩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. |

- 12년 학제인 국외고등학교를 졸업하고, 초·중등 교육과정의 총 수학기간이 최소 23개 학기 이상이면 국내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.
- 12년 미만 학제인 국외고등학교를 졸업했을 경우에는 12년 교육과정 중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의 정규 대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, 국내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합니다.

2) 국내고등학교 및 재외한국학교를 졸업한 경우

- 국내고등학교 또는 재외한국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, 초·중등 교육과정의 총 수학기간이 최소 23개 학기 이상이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.

<재외국민 재학기간 관련 지원자격 인정 예>

| 구분 | 학년 학기 | 1 | | 2 | | 3 | | 4 | | 5 | | 6 | | 7 | | 8 | | 9 | | 10 | | 11 | | 12 | | 13 | | 비고 | | | | | | | | | |
|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-|---|----|---|----|---|----|---|----|---|---|--|--|---|---|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1 | 2 | 1 | 2 | 1 | 2 | 1 | 2 | 1 | 2 | 1 | 2 | 1 | 2 | 1 | 2 | 1 | 2 | 1 | 2 | 1 | 2 | 1 | 2 | 1 | 2 | | | | | | | | | | |
| A | 국내학교 | [Blue shading]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X | X | 23개 학기 | | |
| | 국외학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X | X | | | | | | | | |
| B | 국내학교 | [Blue shading]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X | X | 13학년제 → 12학년제 혼합이수 |
| | 국외학교 (13학년제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국외학교 (12학년제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X | X | | | | | | | |

<재외국민 재학기간 관련 지원자격 불인정 예>

| 구분 | 학년 학기 | 1 | | 2 | | 3 | | 4 | | 5 | | 6 | | 7 | | 8 | | 9 | | 10 | | 11 | | 12 | | 비고 | | | | | | | | | |
|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-|---|----|---|----|---|----|---|---|--|--|--|--|--|--|---------------|
| | | 1 | 2 | 1 | 2 | 1 | 2 | 1 | 2 | 1 | 2 | 1 | 2 | 1 | 2 | 1 | 2 | 1 | 2 | 1 | 2 | 1 | 2 | 1 | 2 | | | | | | | | | | |
| C | 국내학교 | [Blue shading]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23개 학기 미달 |
| | 국외학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D | 국내학교 | [Blue shading]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고교 1개 학년미달 |
| | 국외학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E | 국내학교 | [Blue shading]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11년제 |
| | 국외학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X | X | | | | | | | |

Ⅴ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 총 재학기간 인정기준

1) 인정기준 세부사항

- 국외 동일 학제에서 초·중·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: 12년 이상을 이수하지 않아도 인정
(예시 : 10년제, 11년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지원 가능)
- 학제가 다른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초·중·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: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인정
 - ▶ 다만, 학제 차이로 인한 교육과정의 부족분 기간만큼은 해당국 정규 대학교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합니다.
 - ▶ 학제가 다른 2개 이상의 학교에서 12년 이상의 초·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·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학기(6개월)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.

2) 기타

- 동일학년(학기) 중복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수학기간의 결손이 학제 차이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.
(예시 : 국내초등학교에서 G1-1 이수 후 재외한국학교(동일 학제)에서 G1-2부터 수학한 경우, 국외에서 총 23개 학기 이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 지원 불가)
-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, 국내 초·중등학교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로 인정합니다.
(예시 : 국내초등학교에서 G1-1의 1/3 이수 후 재외한국학교(동일 학제)에서 G1-1의 나머지 2/3를 수학한 경우, 국외에서 총 24개 학기 이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 지원 가능)
-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, 방학, 국외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로 인정합니다.

□ 중고교과정국외이수자 /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 제출서류

※ 제출서류는 모집요강 발표 시 변경될 수 있으니, 추후 모집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| 번호 | 구분 | 중고교과정국외이수자 | | | 전교육과정 국외이수자 | 비고 |
|----|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
| | | 국외 파견 재직자 | 현지 취업자 | 현지 자영 업자 | | |
| 1 | 입학원서 | ○ | ○ | ○ | ○ | • 인터넷 접수 후 출력 |
| 2 | 서류심사 지원서 | ○ | ○ | ○ | ○ | • 인터넷 접수 후 출력 |
| 3 | 학력조회 동의서 | ○ | ○ | ○ | ○ | • 인터넷 접수 시 서식 다운로드 |
| 4 | 고등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 | ○ | ○ | ○ | ○ | |
| 5 | 초등학교 성적증명서(학생부) | ○ | ○ | ○ | ○ | |
| 6 | 중학교 성적증명서(학생부) | ○ | ○ | ○ | ○ | • 재학기간 명기 • 성적증명서에 재학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 재학증명서 별도 제출 |
| 7 | 고등학교 성적증명서(학생부) | ○ | ○ | ○ | ○ | |
| 8 | 국외학교 학사일정표 | ○ | ○ | ○ | ○ | ※ 각주 참고 |
| 9 | 보호자 재직증명서 | ○ | ○ | | | • 국외근무지(국가) 및 국외근무기간 명기 |
| 10 | 현지법인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| | ○ | ○ | | •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기간 명기 |
| 11 | 보호자 현지법인 법인세 납부증명서 또는 보호자 개인 세금 납부증명서 | | ○ | ○ | | • 지원자격기간 종료일 기준 역산 3년치(ex.2020.3.~2023.2.) • 법인세 납부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 세금납입증명서 혹은 급여명세서 제출 |
| 12 | 여권 사본(학생, 부, 모) | ○ | ○ | ○ | 학생만 | • 유효기간(만료일) : 2026년 4월 이후 • 국적 및 사진이 있는 부분 복사 |
| 13 | 출입국사실증명서(학생, 부, 모) | ○ | ○ | ○ | 학생만 | • 조화기간설정 : 지원자격기간 시작 1년 전 ~ 지원자격기간 종료 1년 후 |
| 14 | 출입국사실증명서 사실증명 발급신청 에 대한 위임장(학생, 부, 모) | ○ | ○ | ○ | 학생만 | • 우리대학 소정서식 |
| 15 | 재외국민등록부 등본(학생, 부, 모) | ○ | ○ | ○ | 학생만 | • 현지 영사관 또는 온라인 발급 |
| 16 | 활동증빙서류 목록표/활동증빙서류 | △ (선택) | △ (선택) | △ (선택) | △ (선택) | • 희망자만 제출(선택) • 자세한 작성 방법은 추후 모집요강 참조 |
| 17 | 국외학교 설명자료(스쿨프로파일) | △ (선택) | △ (선택) | △ (선택) | △ (선택) | |
| 18 | 보호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| ○ | ○ | ○ | | |
| 19 | 혼인관계증명서 | | | | ○ | • 결혼이주민의 경우 제출 |
| 20 |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 이를 증명할 서류 | | 해당자만 제출 | | | • 중국인의 경우 중국공증처에서 공증한 원본 |
| 21 | 제3국 수학인증서 | | 해당자만 제출 | | | • 보호자 근무 현지 한국영사관 |

※ 국외학교 학사일정표 : 해당 국외학교의 학사일정(학기시작 및 종료일 등)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, 이와 상응하는 홈페이지 출력물 및 브로슈어 등도 가능(홈페이지 출력 시 해당 웹사이트 주소 표기) /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불필요

㉒ 북한이탈주민 제출서류

※ 제출서류는 모집요강 발표 시 변경될 수 있으니, 추후 모집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- 1) 입학원서 1부
- 2) 북한이탈주민확인서(거주지 시·군·구 기관장 발행) 1부
- 3) 학력확인서(거주지 시·군·구 기관장 발행/국내고등학교 출신자가 아닌 경우) 1부
- 4) 고등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 및 학교생활기록부(국내고등학교 출신자에 한함) 각 1부
- 5)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(검정고시 출신자에 한함) 각 1부
- 6) 활동증빙서류 목록표/활동증빙서류(선택) 1부

㉓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

- 1)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원서접수 시 PDF파일로 업로드 제출합니다.
- 2) 최종합격자는 추후 원서접수 시 업로드 제출한 서류의 원본(영사확인 및 아포스티유 확인 포함)을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3) 최종합격 후 기한 내 원본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, 원본서류가 원서접수 시 업로드한 파일과 상이할 경우 합격 및 입학은 취소합니다.
- 4) 근무·체류기간 관련서류는 <지원자격요건 충족기간> 이상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, 초·중·고등학교 성적증명서(학생부)는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총 수학기간 확인을 위하여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.
- 5) 모든 제출서류는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나, 국외 발급서류는 국외에서의 재학·근무 종료시점에 발급받은 것도 유효합니다.
- 6) 제출서류별로 성명이 다를 경우 해당국 법원이나 공관장이 발행한 <동일인 증명서>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7) 국외에서 발급받은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해당국가에 소재한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 또는 해당국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.
 -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서류는 한글(또는 영문) 공증을 받은 번역문을 첨부
 - 중국어의 경우 중국정부 공증처에서 작성한 한글(또는 영문) 공증서를 함께 제출
 - 국외학교의 「재학증명서」, 「성적증명서」, 「졸업(예정)증명서」는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「아포스티유확인서」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, 해당국가에 소재한 한국영사관에서 「영사확인 날인」 또는 「재외교육기관확인서」를 발급받아 **서류접수 기간 내에 제출**
 - 교육부에서 인정한 재외한국학교는 영사확인 없이 증명서 원본제출
- 8) 중고교과정국외이수자 지원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, 이혼 전 부모의 지원자격 관련 모든 서류와 이혼 후 친권자의 지원자격 관련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9) 입학원서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합격 및 입학은 취소합니다.
- 10)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우리대학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11)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자격에 미달할 경우 사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- 12) 조건부 합격자는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,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과 보호자(부모)의 근무·거주·체류 관련 모든 서류(보호자 재직증명서, 보호자 세금 납입증명서 등) 중에서 본인 해당서류를 졸업 직후 입학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 서류 미제출 또는 전형기간 중 지원자와 보호자(부모)의 자격요건 상실 시 합격 및 입학은 취소합니다.
- 13)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